

보도	2026.6.11.(목) 10:00	배포	2026.6.10.(수)		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1국 증권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김형순	(02-3145-7010)
		담당자	팀 장	이원흠	(02-3145-7012)
	금융투자검사2국 자산운용기획조정팀	책임자	국 장	최상두	(02-3145-7690)
		담당자	팀 장	이진태	(02-3145-7620)
	금융투자검사3국 검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오세천	(02-3145-7830)
		담당자	팀 장	조영석	(02-3145-7832)

시장 변동성 대응 강화를 위한 「내부감사 간담회」 개최

1 간담회 개요

- '26.6.11.(목)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주식·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
 - 해외투자 등 관련 과도한 마케팅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업무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
 - 상품·거래 쏠림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주요 증권사 감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

「내부감사 간담회」 개요

- ☑ **일 시** : '26. 6. 11.(목) 10:00 ~ 10:45
- ☑ **장 소** : 금감원 9층 중회의실
- ☑ **참석자** : (금융감독원) 서재완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,
금융투자검사1국장, 금융투자검사2국장, 금융투자검사3국장
(업계) 12개 증권사(종투10사, 토스증권, 카카오페이증권) 감사 등
- ☑ **내 용** : ①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내부통제 프로세스 점검 강화 등 당부사항 전달 → ②최근 해외투자 등 관련 주요 내부통제 유의사항 안내 → ③토론·질의응답 順으로 진행

1. 서재완 부원장보 모두발언

- 주식·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일수록 우리 자본시장의 견조함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요
 - 변동성에 위법하게 편승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또는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하는 위법 영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
 - 투자수익만을 강조하며 특정 부문에 대한 고위험·쏠림 투자를 광고·권유하는 등의 무책임한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반드시 뿌리 뽑겠음
- 특히,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 중개·광고 과정에서 마케팅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므로
 - 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이 과도한 환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업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
- 감사부서 역시 시장 변동성 하에서 자칫 내부통제가 해이해지기 쉬운 영업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 중점 관리를 실시할 필요
 - 증권사가 단기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과도한 기대감을 악용하지 않도록 엄정히 통제·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람
-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각 사의 최고 내부통제 책임자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과 반드시 공유*해줄 것을 당부
 - * 「해외투자 중개·광고 관련 내부통제 상 유의사항」은 CEO Letter로도 발송 예정
 - 감독당국도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충실한 내부통제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는 든든한 방패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음

2. 설명회 논의 내용

- **(금감원)** 최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투자 중개·광고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상 유의사항* 등을 안내하고

* 주요내용 : <붙임> 참조

- 최근 시장 변동성에 따른 영업현장의 현황, 고객 반응 및 내부통제 상 시사점에 대한 증권사 의견을 면밀히 청취

- **(증권사)** 참석자들은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회사 내의 '내부통제 파수꾼'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

- 최근 변동성 확대는 우리 자본시장의 성장통으로서, 내부통제·리스크 관리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
-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·점검 기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답변

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

- **(기대효과)** 금번 간담회를 통해 감독당국과 금투업계가 최근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, 상호 협력 하에 시장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
- **(향후 계획)**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·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시장 안정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·협력을 강화할 방침임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구분	주요내용
<p>① KPI 내 투자자보호 지표의 실효성 제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회사 및 임직원의 자발적인 투자자보호 노력을 위해 KPI 내 투자자 보호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할 필요 □ 평가수행 단계에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, 평가 결과의 이사회 보고 등 환류 절차를 통해 경영진이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
<p>② 이벤트 및 투자광고 내부통제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이벤트 시행 전 규제 변경 사항,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집중 리스크 등을 사전 검토하고 대응방안 마련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자광고 게시 전 광고문구나 이미지가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 등을 심의한 뒤,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게시 필요 ○ 이벤트를 시행한 이후에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시 대응할 필요
<p>③ 해외 현지브로커 선정·관리 강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해외주식 등 중개업무 수행 시 복수의 현지브로커를 선정하고, 전산·재무안정성, 사업지속성 등을 감안한 체계적 평가기준·프로세스 마련 필요 □ 해외중개업무의 일관성·연속성 유지 및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현지브로커 및 제3자(해외거래소 등) 관련 리스크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절차, 매뉴얼을 마련
<p>④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절차 합리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투자자의 원화예탁금 외 외화예탁금도 협회 모범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을 결정해야 하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예탁금 업무와 무관한 항목을 비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
<p>⑤ 기타 개선 필요 사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과당매매 여부를 점검하여 투자자 피해 예방 필요 □ 과손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, 알림 등을 보완하여 고객이 손실을 빠르게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□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관리와 관련하여,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의사 취합 및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점검 □ 해외주식 미수거래 및 담보대출 등 제공 시 대상종목, 증거금률, 담보비율 등을 적시에 조정하여 리스크를 관리